

동의 없는 정신병원으로의 강제입원과 신체의 자유¹⁾

1. 사건개요

청구인(Ilie Comorașu, 1971년생)은 벨기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루마니아 Prăjești市의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2007년 12월 벨기에에서 루마니아로 돌아왔다. 같은 해 12월 28일 저녁, 청구인의 장모는 루마니아로 돌아온 청구인의 공격성을 알리며 응급서비스에 전화했다. 응급서비스 센터는 장모에게 경찰서에 가서 있을 것을 권유했고,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찰이 도착했으며 이어서 밤 11시경에 구급차가 도착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경찰과 응급구조대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들은 결국 이튿날 아침 2-3시경에 돌아갔다.

같은 날 아침 9시경, 시청의 차량이 집 마당 앞에서 눈을 청소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다가왔다. 경찰들에 의해 청구인은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져 움직이지 못했고 이들은 청구인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²⁾ 청구인은 ‘급성 정신병적장애(trouble psychotique aigu)’라고 진단받아 입원하였고 2007년 12월 29일부터 2008년 1월 15일까지 해당병원에 있었다.

청구인은 2007년 12월 29일부터 2008년 1월 11일 사이에 자신에게 진정제를 주입한 것을 알았고 그가 무의식이었던 동안 왼쪽 귀가 타격받아 심각한 출혈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었음을 알게 되었다. 2008년 1월 10일 유양돌기염(mastoidite droite)³⁾으로 고통 받는 청구인을 보고 나서야 바커우 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진료받았다. 청구인은 2008년 3월 3

1) AFFAIRE COMORAȘU c. ROUMANIE(Requête n°16270/12), 31 mai 2016.

2) 청구인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한 경찰관의 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그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공격적이었고 이동 중인 차 안에서도 폭력적이었으며 청구인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중이염의 합병증으로서 증세로는 이루(耳漏: 귓구멍에서 고름이 나오는 병)가 증가되어 청력장애가 심해지고 38℃ 전후의 고열이 나며, 편두통과 이내박동감(耳內拍動感) 등도 보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2016년 6월 27일 접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2609&cid=40942&categoryId=32798>

일까지 오른쪽 귀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았고 국립당뇨연구소는 청구인의 질병이 정신병원 입원 동안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구인은 벨기에로 돌아가지도 못했다.

청구인은 2009년 1월 20일 바커우(Bacău) 법원에 병원으로의 이송방법, 입원조건,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부재 및 청구인의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정신병원으로 연행한 경찰관 5명과 2008년 5월과 6월에 시행된 시의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청구인을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선전한 Prăjești 시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⁴⁾

2009년 3월 19일 경찰의 요청으로 청구인은 정신의학 검사 및 심리평가를 받았고 정신과 검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불안정 성격 유형의 장애를 겪고 있었다. 2009년 4월 14일 바커우 법의학 연구소는 청구인의 의료기록과 평가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2009년 10월 9일 검사는 청구인이 벨기에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그의 가족 및 이웃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non-lieu)을 내렸고 동 결정은 1심에서 확정되었다. 2010년 11월 25일 바커우 항소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해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청구인의 항소를 인용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11일 검찰은 2009년 10월 9일에 내린 결정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⁵⁾

검사는 의료감정(expertise médicale)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울증(trouble affectif bipolaire - épisode aigu hypomaniaque avec éléments délirants interprétatifs)을 겪고 있었고 그의 정신적 상태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지 않고

4) 2012년 6월 청구인은 Prăjești市の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5) 날짜별 사건경과

날짜	내용
2007년 12월 28일	청구인의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음. 장모가 응급서비스에 전화함
2007년 12월 29일 ~ 2008년 1월 15일	
2009년 1월 20일	청구인 정신병원 입원
2009년 10월 9일	경찰관 및 시장 고소
2010년 11월 25일	검사의 불기소 결정
2011년 5월 11일	청구인 항소 인용
2012년 3월 5일	검사의 불기소 결정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도 특별치료 및 감시가 필요했던 점을 지적했다.

청구인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의 금지)를 원용하면서 바커우 정신병원에 비자발적으로 수용되었고 경찰관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인의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 효과적인 조사(enquête effective)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 협약 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1항을 원용하면서 청구인이 그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그의 의지와 반대로 청구인의 승낙(동의)없는 의학적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동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청구했다.

2. 실시내용

(1) 유럽인권협약 제3조⁶⁾ 위반에 대한 판단

1) 유럽인권협약 제3조 실체적 위반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정신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고소 이후에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11일에 내려진 검찰의 결정이 청구인에게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루마니아 정부는 청구인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던 것은 그의 장모가 응급서비스에 전화를 했기 때문이고 병원으로 후송할 당시 청구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것은 그의 가족과 경찰들에게 보인 공격적인 상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차트에 따르면 귀쪽의 상처(부상)는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루마니아 정부는 청구인이 2010년 11월 25일 항소가 인용된 뒤에는 사건의 추이에 대해서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우선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반

6) 제3조(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되려면 부당한 대우가 심각함의 최소한(minimum de gravité)에 도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⁷⁾

이러한 최소한의 평가는 상대적이다. 즉 부당한(굴욕적인) 대우의 기간이나 신체적·심리적 영향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성, 나이 및 건강 상태와 같이 해당 사건의 모든 환경에 따라 평가는 달라진다. 또한 굴욕적인 대우의 고의나 동기도 고려될 수 있다.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할 때, 그 행위에 필요하지 않은 물리력의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원칙적으로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게다가 체포할 당시 경찰들이 사용한 물리력은 발생한 사건상황에 비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경우에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견지에서 수갑착용 및 물리력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필요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된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 특히 그들의 취약성과 무력함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행한 치료가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요청과 양립하는지 평가해야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개인이 국가의 다른 서비스 혹은 경찰로부터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이러한 사항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공식적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효과적인 조사의 부족을 주장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7) 유럽인권재판소는 Bouyid v. Belgium(n°23380/09, 2015. 9. 28.) 사건에서 “공권력에 의한 물리력의 사용은 존엄성을 침해하고, 심각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청구인들 태도에 근거한 물리적 행사의 엄격한 필요성을 원용하여 반박할 수 있다. (...) 유럽인권협약 제3조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들 중 하나이며 고문과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의 금지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긴밀하게 연결된 가치이다. 유럽인권협약상의 다른 조항들과 달리 동 협약 제3조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동 협약 제15조(비상시의 의무 예외) 제2항을 근거로 심지어 테러와 조직범죄와의 전쟁과 같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된 사람의 행동에 관계없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동 협약 제3조에 위반되는 부적당한 대우에 대한 주장들은 적합한 증거(preuve appropriée)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지(au-delà de tout doute raisonnable)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충분히 강력하고, 명백하며 일관된 추정이 가능하거나, 이와 유사할 정도로 반박되지 않은 추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거가 가능하다고 덧붙인다. 구금된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쟁점이 되는 사건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이 당국의 관할 내에 있을 때, 그들의 통제 하에 부상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추정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는 설명(explication satisfaisante et convaincante)을 제공해야 하는 쪽은 정부이다. (...)”라고 판단하였다.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15호, 헌법재판연구원, 2015년 10월 참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인의 기억들은 쇠퇴하고, 증거들은 사라지거나 찾을 수 없으며 어떤 증거들은 훼손되거나 소멸되고 효과적인 조사로 이끌 기회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속하고 지체없이 청구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사로 이끌 책임이 있다. 청구인은 그의 집 앞에서 수갑으로 손과 발이 채워져 경찰관 5명에 의해서 연행되었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진술했다. 연행되기 전날 밤, 경찰과 구급차량은 가축을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행동한 청구인을 진정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구인의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해 보건대 5명의 경찰들이 청구인을 연행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경찰임무의 어려움과 인간행동의 예측불가능성을 상기해야 하고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여 당국의 책임을 확장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동 사건에서 사용된 물리력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입과 발생한 부상의 존재에 특별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어떠한 물리적·심리적 폭력이 청구인을 연행할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이 경찰들에 의해서 연행되는 방법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실제적인 측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2) 유럽인권협약 제3조 절차적 위반에 대한 판단

루마니아 정부는 검찰의 조사가 신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견에 반대한다. 해당사건은 2007년 12월 29일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2008년 3월 3일에 병원에서 나왔다. 이후 2009년 1월 20일 경찰관들을 고소했고 최종 중국판결은 2010년 11월 25일에 통지되었으며 2011년 3월 22일 마지막 절차행위를 거쳐 처분을 통보했고 2012년 3월 5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청구인의 고소는 국내법에서 정한 시효 전에 이루어졌다. 당시 시행 중인

국내법 기준에 따르면 단기소멸시효 기간은 최소 3년이였다. 증인의 기억들은 상세하고 포괄적이어서 10개월의 지연은 조사에 불리하지 않았고 모든 의료문서는 잘 보관되어 있었으며 (필요한) 조사자에게 제공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의 태도(행동)에 관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적 절차의 추이에 대해 문의하고 적극적이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사건발생 당시 정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들이 형사절차 종료 전에 사건 당사자들과 접촉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한다. 조사관들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모든 관련 조사를 하였고 2011년 5월 11일 검찰이 내린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할 의무와 유효기간 내에 청구인이 이의제기할 모든 가능성이 있음을 역시 알리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서 검찰은 합리적으로 신속성과 명확성을 가지고 행동했다. 약 8개월 동안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검토할 수 있었고 증인들로부터 관련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25일 항소법원의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다. 항소법원은 조사가 효과적이지 못했고 사건의 모든 정황이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명확한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새로운 결정은 비난받은 결정의 이유를 재현할 뿐이었다. 새로운 정신의학 감정을 별도로 하고 어떠한 조사절차상의 행위가 사건이 검찰에게 넘어간 후에 진행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새로운 불심리 결정은 청구인에게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럽인권재판소가 동 사건에서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 않았다고 결론내리는데 충분하다. 그러므로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2) 유럽인권협약 제5조⁸⁾ 위반에 대한 판단

8) 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청구인은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제8조(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원용하면서 불법적으로 거주지에서 연행되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동의없는 치료를 받았으며 당국이 비자발적인 강제수용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관련법률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의 이유가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 e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청구인의 보호자가 서명한 입원동의는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2002년 7월 11일 법 제487호)⁹⁾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더구나 아내의 동의는 청구인의 입원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문제의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루마니아 정부는 청구인이 그의 아내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에 오게 되었고 입원할 당시 정신과 의사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정신병원 입원은 자발적인 입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청구인이 자유박탈을 당했는지에 대한 판단

유럽인권재판소는 우선 청구인의 정신병원 수용의 자발성 유무에 대해서

-
-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되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2. 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의 체포 사유 및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이 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지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의 규정에 위반된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9) 사건 발생당시 시행중이었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2002년 7월 11일 법 제487호)’은 비자발적 수용을 규제하고 있었다. 2002년 법은 의학 병력과 정신병원으로 수용하게끔 이끄는 상황에 따라 비자발적인 정신병원으로의 수용이 가족 혹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제4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비자발적 수용에 관한 결정은 (법률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사법구제의 대상이 되었고 환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제54조). 2002년 법은 2012년에 상세히 개정(2012년 7월 17일 법)되었으나 사건발생 당시에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다.

양 당사자들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신병원으로의 수용이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자유의 박탈(privation de libert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관련 서류들에 기반을 두어 판단한다.

상기한 의학검진의 객관적 측면에 관해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이 자발적으로(de sa propre initiative) 퇴원할 가능성 없이 2007년 12월 29일에서 2008년 1월 15일까지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었고 입원 첫날은 그의 가족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음을 확인한다.

주관적 측면에 관해서 루마니아 정부가 청구인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청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고 정신병원으로 이송된 방법은 청구인이 정신병원으로의 수용에 반대(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수집된 증언들(특히 청구인의 아내, 사촌)은 청구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청구인의 아내가 그의 입원에 동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내의 의도가 청구인의 의도를 대체할 수 없고 적용되는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가족이 동의한 입원은 항상 비자발적인 입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의 입원이 아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해도 그러한 이행은 공공병원에서 당국(특히 경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들으로써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이 유럽인권협약 제5조에서 정한 기준들에 따라 그의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판단한다.

2) 유럽인권협약 제5조의 요구사항과 청구인의 자유박탈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판단

판례에 의해서 축적된 일반원칙들에 따르면 구금(détention)이 국내법에 전적으로 합당하다 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 국내기관이 관련 법률을 제

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구금에는 국가의 악의(mauvaise foi) 혹은 기만(tromperie) 요소가 있는 것이다. 동 사안의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정신병원으로의 수용은 자발적이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사건 발생 당시 상기법률 제49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내려진 입원결정이 본인 혹은 그의 대리인에게 통지되어야 하는 형식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진 결정을 환자 본인 혹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하는 심사위원회가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의 흠결(결함)은 강제입원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하는 실질적인 위협이고 이러한 결함은 청구인에게 피해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자유박탈은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다.

발생한 상황의 견지에서 청구인의 자유박탈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덜 심각한 다른 방법들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했었다. 관련증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7년 11월 29일 경찰들이 청구인의 집에 왔을 때 청구인은 집 앞의 눈을 치우고 있던 중이었다. 청구인은 어떤 누군가와도 다투고 있던 중이 아니었고 수갑이 채워진 것은 청구인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청구인의 공격성은 수갑이 채워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연행 당시 청구인이 자신이나 지인들에게 명백한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전술한 바를 감안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청구인의 자유박탈이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문제 있는 법률에 기반을 둔 것이며 루마니아 정부는 자유박탈이 허용되는 동 협약 제5조 제1항의 a 내지 f에서 열거한 다른 이유에 해당됨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1항에 위반되어 루마니아 정부는 청구인에게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서 각각 10,000 유로씩 지급하도록 한다.